

의안번호	제 호
의 결 연 월 일	2023. . . (제 회)

의결사항	
------	--

고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고 성 군 수
제출연월일	2023. 11. 17.

고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 호
----------	-----

제출연월일: 2023. 11. 17.

제 출 자: 고성군수

1. 개정이유

-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투자기업 지원을 확대하고,
- 공정하고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투자유치 위원회를 재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투자기업 유치를 위한 지원 확대·개편

- 1) 신설·증설 기업 지원 근거 신설(안 제5조의2)
- 2)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확대(안 제6조)
- 3) 관광사업 및 문화콘텐츠산업 지원 근거 신설(안 제6조의2)
- 4) 임대료 지원 근거 신설(안 제8조, 안 제19조)

나. 투자유치위원회 재정비

- 1) 위원 변경(투자유치업무 부서장, 도시계획업무 부서장 추가 /산업건설국장 제외)(안 제20조)
- 2) 투자유치업무 담당주사를 간사로, 담당자를 서기로 조정(안 제20조)
- 3) 국민권익위 개선권고에 따라 위원의 해촉 및 제척 등의 규정 삭제(위원회 일반조례 적용)(안 제22조)

다. 이중지원 금지에 대한 예외 조항 마련(안 제2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자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성별영향평가 의견 반영: [복지지원과-38683(2023. 10. 10.)]

조례안	수정안(검토의견)	검토결과
<input type="checkbox"/> 해당조항: 제20조(투자유치위원회)	<input type="checkbox"/> 제20조(투자유치위원회)제2항 단서 추가 <u>‘다만,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한다.’</u>	<input type="checkbox"/> 검토의견 반영

라. 기 타

- 1) 입법예고: 고성군공고 제2023-1520호
가) 예고기간: 2023. 10. 10. ~ 10. 30.(20일간)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3)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4)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 5)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붙임

4. 본문: 붙임과 같음

고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10호부터 제1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투자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가. 신설기업: 고성군(이하 “군”이라 한다)내에 사업장용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의 용도를 사업장 용도로 변경 또는 폐건물을 투자사업장 용도로 매입하여 사업 시설을 설치하는 기업
나. 증설기업: 군내에 기존 사업장의 건축물 연면적을 증가하여 사업 시설을 설치하는 기업

10. “관광사업”이란 「관광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라 관광객을 위하여 운송·숙박·음식·운동·오락·휴양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관광에 딸린 시설을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을 말하며, 그 종류는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 각 호 중 관광숙박업, 관광객이용시설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관광 편의시설업을 말한다.

11. “문화콘텐츠산업”이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산업과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문화적 요소가 내재된 콘텐츠 또는 이를 제공하는 서비스의 제작·유통·이용 등과 관련한 산업을 말한다.

12. “투자유치촉진지역”이란 최근 3년간 기업 투자유치 체결실적 및

보조금 지원을 등이 저조한 지역을 말한다.

13.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2조제1호에 따라 투자기업에 지급하는 급부금을 말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제3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투자유치촉진지역

제4조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1조 및 제19조”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및 제24조”로 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신·증설 기업지원) ① 군수는 군내에 사업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지원기준, 지원한도액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제1항 중 “100억원”을 “200억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도로명주소법」 제8조의2”를 “「도로명주소법」 제10조”로 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관광사업 및 문화콘텐츠산업 지원) ① 군수는 군내에서 관광사업 및 문화콘텐츠산업 투자기업에 예산의 범위에서 최대 30억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대규모 투자를 하는 경우 최대 200억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 ② 고용보조금의 경우에는 최대 1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 ③ 문화콘텐츠산업의 경우에는 건물 임대료를 지원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서 제3항에 따른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기준, 지원한도액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중 “경우”를 “경우 투자기업의 토지 임대료를 지원하거나”로 한다.
제19조제1항제2호 중 “임대산업단지”를 “임대료 지원 및 임대산업단지”로 한다.

제2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건설국장이 되며”를 “민간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로, “위촉한다”를 “임명하거나 위촉한다”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제20조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담당과장”을 “담당”으로, “담당주사”를 “담당자”로 한다.

1. 투자유치업무 부서장
2. 도시계획업무 부서장

제22조를 삭제한다.

제23조제1항 중 “제3조부터 제7조까지,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보조금”을 “투자기업에 대한 보조금 또는 융자금”으로 한다.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7호 중 “사업이행기간”을 각각 “사후관리기간”

으로 한다.

제27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제27조제1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7조에 따른 투자촉진기반시설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2.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신증설 지원 대상 기업이 제19조제1항제3호의
사업장 부지매입 용자 지원을 받은 경우

제27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항제2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투자기업”이란 <u>고성군(이하 “군”이라 한다)내에서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의 용도를 사업장의 용도로 변경 또는 폐건물을 투자사업장 용도로 매입하여 사업 시설을 설치하는 기업을 말한다.</u></p> <p>2. ~ 9. (생략)</p> <p><u><신설></u></p>	<p>제2조(정의) ----- -----.</p> <p>1. “투자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p> <p>가. <u>신설기업: 고성군(이하 “군”이라 한다)내에 사업장용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의 용도를 사업장 용도로 변경 또는 폐건물을 투자사업장 용도로 매입하여 사업 시설을 설치하는 기업</u></p> <p>나. <u>증설기업: 군내에 기존 사업장의 건축물 연면적을 증가하여 사업 시설을 설치하는 기업</u></p> <p>2. ~ 9. (현행과 같음)</p> <p>10. “관광사업”이란 「<u>관광진흥법</u>」 제2조제1호에 따라 <u>관광객을 위하여 운송·숙박·음식·운동·오락·휴양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관광에 딸린 시설을 갖추어</u></p>

<신 설>

<신 설>

<신 설>

제3조(기업투자촉진지구의 지정 등) ①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을 말하며, 그 종류는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 각 호 중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관광편의시설업을 말한다.

11. “문화콘텐츠산업”이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산업과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문화적 요소가 내재된 콘텐츠 또는 이를 제공하는 서비스의 제작·유통·이용 등과 관련한 산업을 말한다.

12. “투자유치촉진지역”이란 최근 3년간 기업 투자유치 체결 실적 및 보조금 지원율 등이 저조한 지역을 말한다.

13.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2조제1호에 따라 투자기업에 지급하는 급부금을 말한다.

제3조(기업투자촉진지구의 지정 등) ① -----

한다)는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 외 소재 사업장의 군내 유치와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역을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기업투자촉진지구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0조의 고성군 투자유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할 수 있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조성된 지방 일반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신 설>

2. (생 략)

②·③ (생 략)

제4조(수도권기업의 군내 이전 등에 대한 지원)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1조 및 제19조에 따라 수도권기업의 군내 이전기업, 군내 신·증설투자기업, 군내로의 국내복귀기업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1. -----
----- 따라 -----

2. 투자유치촉진지역

3. (현행 제2호와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제4조(수도권기업의 군내 이전 등에 대한 지원)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및 제24조-----

제5조의2(신·증설 기업지원) ①

제6조(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① 군수는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대규모 투자기업에 예산의 범위에서 최대 10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② (생략)

③ 제1항의 투자기업의 인근도로에 대하여 「도로명주소법」 제8조의2에 따라 기업명을 판명예도로명을 부여할 수 있다.

<신설>

군수는 군내에 사업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지원기준, 지원한도액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① -----

----- 200억원 -----
-----.

② (현행과 같음)

③ -----
----- 「도로명주소법」

제10조-----
-----.

제6조의2(관광사업 및 문화콘텐츠 산업 지원) ① 군수는 군내에서 관광사업 및 문화콘텐츠산업 투자기업에 예산의 범위에서 최대 30억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대규모 투자를 하는 경우 최대 200억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고용보조금의 경우에는 최대

제8조(임대용지 공급) 군수는 전
략사업 활성화 및 지역균형발전
을 위한 기업유치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산업용 부지를
매입하여 임대할 수 있다.

제19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한 용도
에 사용한다.

1. (생략)
2. 임대산업단지 용지 매입

3. ~ 5. (생략)

② (생략)

제20조(투자유치위원회) ①·②
(생략)

③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
원장은 산업건설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
서 군수가 위촉한다. <단서 신
설>

1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③ 문화콘텐츠산업의 경우에는
건물 임차료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에서 제3항에 따른 투
자기업에 대한 지원기준, 지원
한도액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임대용지 공급) -----

----- 경우 투자기업의 토지
임대료를 지원하거나 --.

제19조(기금의 용도) ① -----

-----.

1. (현행과 같음)
2. 임대료 지원 및 임대산업단
지 -----

3. ~ 5.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20조(투자유치위원회)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민간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양성평등기본법」 제21
조에 따라 성별 균형을 고려하

<신 설>

<신 설>

1. ~ 4. (생 략)

④ · ⑤ (생 략)

⑥ 위원회는 간사와 서기 각 1 명을 두며, 간사는 투자유치업 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투 자유치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⑦ · ⑧ (생 략)

제22조(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

은 자신과 직접 또는 간접적으 로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 의·의결에는 제척된다.

② 심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 는 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 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 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 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 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은 제1항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소명하고 스스로 해당

여 구성하여야 한다.

1. 투자유치업무 부서장

2. 도시계획업무 부서장

3. ~ 6. (현행 제1호부터 제4호 까지와 같음)

④ · ⑤ (현행과 같음)

⑥ -----

-- 담당-----
----- 담당자-----.

⑦ · ⑧ (현행과 같음)

<삭 제>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위원이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23조(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보조금 신청 등) ① 군수는 제3조부터 제7조까지,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도비 등 자금이 필요할 경우에는 이를 도지사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③ (생략)

제26조(지원 등의 취소 및 환수 등) ① 군수는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지원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원받은 보조금은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고, 융자금은 조기상환을 명하여야 한다.

1. 사업개시일부터 규칙에 정하는 사업이행기간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휴·폐업한 경우

2. ~ 6. (생략)

7.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이 규칙으로 정하는 사업이행기

제23조(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보조금 신청 등) ① ----- 투자기업에 대한 보조금 또는 융자금-----

-----.

②·③ (현행과 같음)

제26조(지원 등의 취소 및 환수 등) ① -----

-----.

1. -----
-- 사후관리기간-----

2. ~ 6. (현행과 같음)

7. -----
----- 사후관리기

<p>간 동안 정산 시의 고용인원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p> <p>8.·9. (생략)</p> <p>② (생략)</p> <p>제27조(이중지원 금지) ① 이 조례에서 정한 보조금 및 융자금은 중복 지원할 수 없다. <u>다만, 제7조에 따른 투자촉진기반시설 지원금을 제외한다.</u></p> <p><신설></p> <p><신설></p> <p>② 보조금을 지원 받으려는 기업이 국가나 도 등으로부터 같은 목적의 다른 보조금을 지원 받은 경우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단서 신설></p>	<p>간 -----</p> <p>-----</p> <p>8.·9.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제27조(이중지원 금지) ① -----</p> <p>-----</p> <p>-----, <u>다만,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은 제외한다.</u></p> <p>1. <u>제7조에 따른 투자촉진기반시설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u></p> <p>2. <u>지방투자촉진보조금 신증설 지원 대상 기업이 제19조제1항제3호의 사업장 부지매입 융자 지원을 받은 경우</u></p> <p>② -----</p> <p>-----</p> <p>-----</p> <p>-----</p> <p>----. <u>다만, 제1항제2호의 경우는 제외한다.</u></p>
--	---

고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해당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고성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제2호
-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조례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로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함.

작성자: 경제기업과장 한 영 대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제14조(지역 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투자 유치활동 지원, 정보통신 진흥 및 지역 특성에 맞는 중소기업의 창업 여건 개선 등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제3조(기업투자촉진지구 지정 등) 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는 도의 소재 사업장의 도내 유치와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역을 기업투자촉진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시장·군수와 협의하고 제23조의 경상남도투자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9.1.3., 2023.3.30.>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성된 지방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2. 투자유치촉진지역

3. 지역균형개발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 기업투자촉진지구에 입주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입지보조금,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설비보조금, 이전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기준과 지원한도액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1.3.>

③ 삭제 <2019.1.3.>

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업투자촉진지구의 분양이 완료된 경우 및 존치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시장·군수와 협의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9.1.3.>

제6조(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① 도지사는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대규모 투자기업에 예산의 범위에서 최대 200억 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다만, 투자유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정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얻어 조례에서 정한 범위를 초과하여 특별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1.3., 2023.3.30.>

② 제1항의 지원기준, 지원한도액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1.3., 2023.3.30.>

③ 제1항의 투자기업의 인근도로에 대하여 「도로명주소법」 제10조에 따라 기업명을 딴 명예도로명을 부여하도록 시장·군수에게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2.11.17.>

제6조의3(관광사업 및 문화콘텐츠산업 지원) ① 도지사는 도내에서 관광사업 및 문화콘텐츠산업 투자기업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최대 30억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대규모 투자를 하는 경우 최대 20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② 고용보조금의 경우에는 최대 1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③ 문화콘텐츠산업의 경우에는 건물 임차료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에서 제3항에 따른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기준, 지원한도액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3.30.]

제7조(임대용지 공급 등 <개정 2020.12.31.>) 도지사는 전략산업 활성화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기업유치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투자기업의 토지 임대료를 지원하거나, 산업용 부지를 매입하여 임대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제32조(이중지원 금지) ① 이 조례에서 정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은 중복 지원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개정 2019.1.3., 2023.3.30.>

1. 제6조의2에 따른 투자촉진기반시설 보조금을 지원받는 경우

2.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신증설 지원 대상 기업이 제19조제1항제3호의 사업장 부지 매입 용자 지원을 받는 경우

② 도지사는 보조금을 지원 받으려는 기업이 국가나 도 등으로부터 같은 목적의 다른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다만, 제32조제1항제2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9.1.3.> , <개정 2023.3.30.>